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경호처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한 특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대통령경호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27. ~ 9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 처장이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별표 1 중 3급 “18”을 “19”로, 3급·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“433”을 “43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</u> <u>처장이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</u> <u>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</u> <u>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</u> <u>보할 수 있다.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(제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	.		.		.		
	.		.		.		
3급			<u>18</u>		<u>19</u>	+1	
	.		.		.		
3급 · 4급 또는 별정직 4급							
상당 이하			<u>433</u>		<u>432</u>	-1	
	.		.		.		
	.		.		.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2